



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**울산**

---

# 2022 울산 청년 희망 공제사업 운영 지침

---



# 목 차

1. 운영체제 .....	1
2. 가입자격 .....	2
3. 가입신청 및 적립 .....	4
4. 만기지급 .....	5
5. 중도해지 .....	6
6. 기타 .....	8
▶ FAQ .....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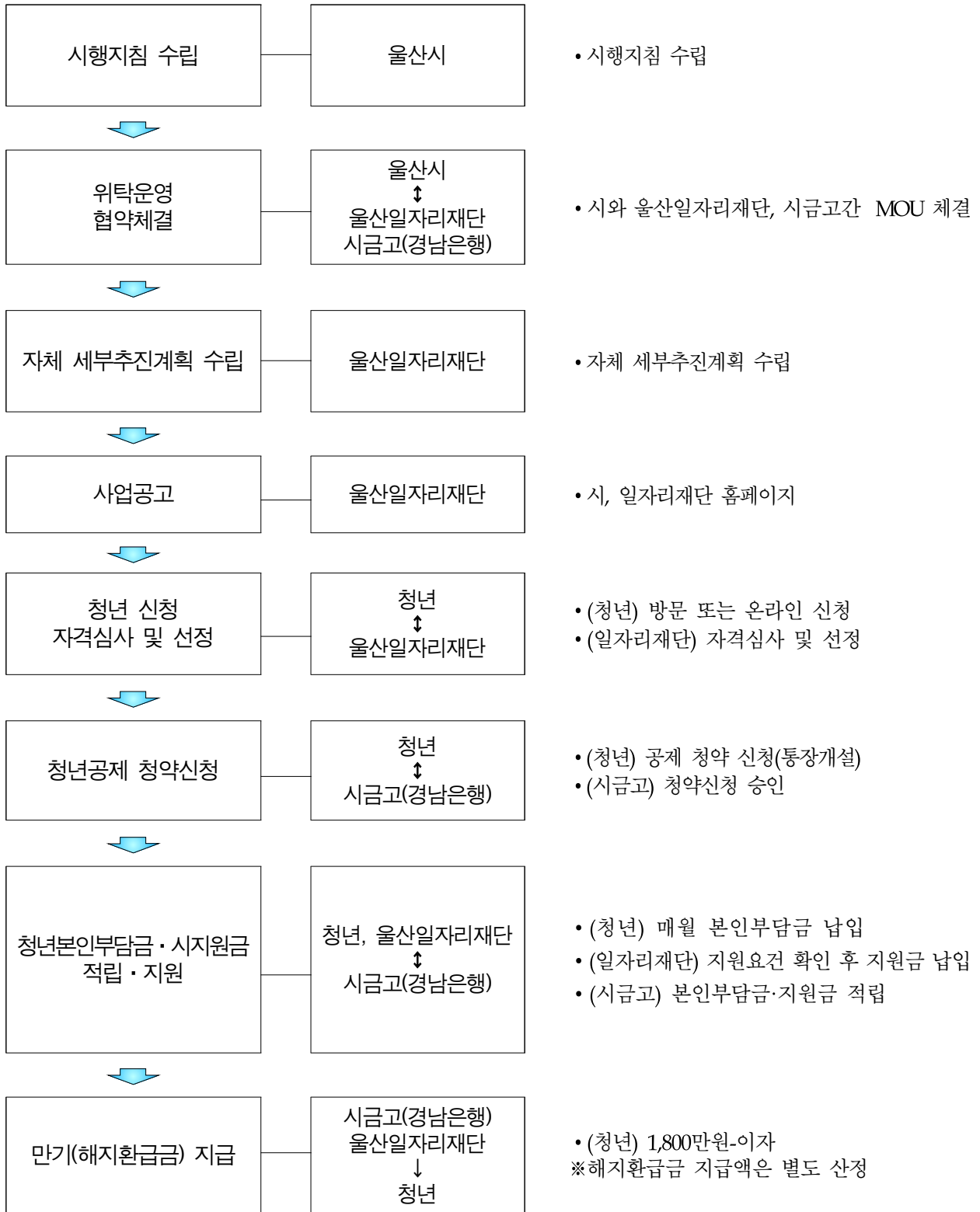
## [서 식]

1. 참여 신청서 .....	9
2. 결정 통지서 .....	10
3. 신청 확인서 .....	11
4. 지원금(만기, 해지) 신청서 .....	12
5. 유예 신청서 .....	13
6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.....	14

#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개요

구분	상세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거주지) 2022. 1. 1.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 주민등록자(외국인 제외)</li> <li>▪ (나이) 2022. 1. 1.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미혼인 자 ※ 군필자는 군경력 포함하여 만 39세까지 인정</li> <li>▪ (소득) 월급여 총액이 350만원이하 인 자</li> <li>▪ (재직)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<b>제조업 중소기업</b>에 2년이상(연속) 정규직(주40시간 이상)으로 재직</li> </ul>	모집인원 45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입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정부공제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등)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(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포함)</li> <li>▪ 본 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(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포함)</li> <li>▪ 생계급여 수급자 ▪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</li> <li>▪ 사업주(사업주 배우자 포함)와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</li> <li>▪ 재택근무자</li> <li>▪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적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월 50만원(청년 근로자 30만원+시 20만원)</li> </ul>	3년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만기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결혼했을 경우 : 1,800만원(근로자 1,080, 시 720) + 약정이자</li> <li>▪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: 1,440만원(근로자 1,080, 시 360) + 약정이자</li> <li>※ 만기액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하며,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(결혼조건 제외) 할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 적용(기준일 : 발생일 전월기준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지환급금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결혼했을 경우</th> <th colspan="2">결혼하지 않았을 경우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청년자기부담금</th> <th>지원금</th> <th>청년자기부담금</th> <th>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귀책</td> <td>전액</td> <td>50%</td> <td>전액</td> <td>미지급</td> <td rowspan="4">※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- 12개월 이하일 경우 : 지급 제외</td> </tr> <tr> <td>기업귀책</td> <td>전액</td> <td>50%</td> <td>전액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기타</td> <td>사망</td> <td>전액</td> <td>전액</td> <td>미지급</td> </tr> <tr> <td>그외</td> <td>전액</td> <td>전액</td> <td>전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결혼했을 경우		결혼하지 않았을 경우		비고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청년귀책	전액	50%	전액	미지급	※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- 12개월 이하일 경우 : 지급 제외	기업귀책	전액	50%	전액	50%	기타	사망	전액	전액	미지급	그외	전액	전액	전액	
구분	결혼했을 경우		결혼하지 않았을 경우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귀책	전액	50%	전액	미지급	※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- 12개월 이하일 경우 : 지급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업귀책	전액	50%	전액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사망	전액	전액	미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그외	전액	전액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1 운영체계



## 2 가입자격

### 가. 거주지 기준

- 2022. 1. 1. 이전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외국인은 제외)

### 나. 나이 기준

- 2022. 1. 1.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인 자(미혼인 자)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

### 다. 소득 기준

- 본인 월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자
- 전년도(‘21년 연말정산서)의 총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,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50만원 이하일 것(기본급, 각종 제수당, 상여금과 고정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포함)

### 라. 재직 기준

- 울산지역(사업자등록증 기준) 중소기업법상 **제조업 중소기업\***에 2년\*\* 이상(연속) 정규직\*\*\* (주40시간 이상)으로 재직

\*표준산업분류표 업종코드 제조업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(별첨)

\*\*고용보험 가입기간(접수일 기준)이 연속 2년이상(동일기업)

\*\*\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, 파견근로자,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 미해당

-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\*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
- 해당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서 제외

※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

### 마. 가입 제한자

- 정부공제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등)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(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)
- 본 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(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)
- 생계급여 수급자,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
-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재택근무자 ○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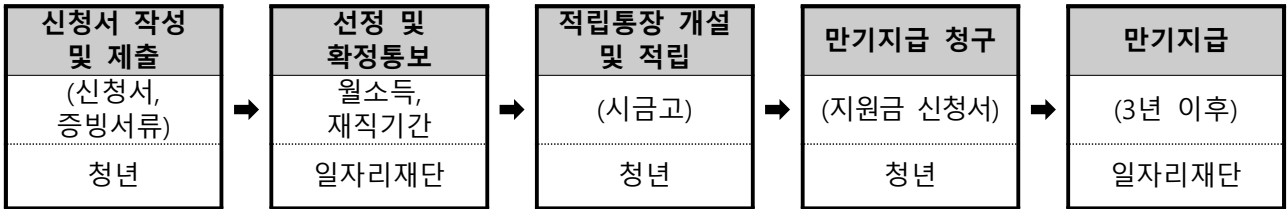
**별첨**

**<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3)>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	분류부호	중소기업 (평균매출액)	소기업 (평균매출액)
제조업 (6개업종)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1,500억원이하	120억원 이하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80억원 이하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120억원 이하
	1차 금속 제조업	C24		
	전기장비 제조업	C28		
	가구 제조업	C32		
농업, 임업 및 어업		A		80억원 이하
광업		B		
제조업 (12개업종)	식료품 제조업	C10	1,0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담배 제조업	C12		80억원 이하
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	80억원 이하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	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120억원 이하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80억원 이하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120억원 이하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	80억원 이하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120억원 이하
	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80억원 이하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120억원 이하
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80억원 이하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	D		120억원 이하
수도업		E36		80억원 이하
건설업		F		50억원 이하
도매 및 소매업		G		
제조업 (6개업종)	음료 제조업	C11	8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80억원 이하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120억원 이하
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80억원 이하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30억원 이하
	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수도,하수 및 폐기물 처리,원료재생업 (수도업제외)		E (E36 제외)		80억원 이하
운수 및 창고업		H		50억원 이하
정보통신업		J		
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		C34	60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M		30억원 이하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제외)		N (N76제외)		30억원 이하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Q		10억원 이하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	R		30억원 이하
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	S		10억원 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		I		10억원 이하
금융 및 보험업		K		80억원 이하
부동산업		L	400억원 이하	30억원 이하
임대업		N76		30억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		P		10억원 이하
※비고 :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				
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		C30393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
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		C31202		
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		C31322		

### 3 가입신청 및 적립

#### 가. 신청절차



#### 나. 지원내용

- 매월 본인부담금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납입액에 매칭하여 시지원금 적립
- 3년 가입시 본인 납입액 1,080만원+시 지원금 720만원+이자 = 1,800만원+a

#### 다. 청 년(본인부담금)

- 납입대상 :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선정자(별도 공고)
- 납입기간 : 가입일로부터 36개월(3년간)까지
- 통장개설 : 선정통보를 받은 후 시금고(경남은행)에서 적립통장 개설
- 납입시기 : 매월 25일
- 납입금액 : 매월 30만원(3년간 1,080만원)
- 납입방법 : 청년 본인 계좌에서 반드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

#### 라. 울산일자리재단(시 지원금)

- 적립기간 : 가입일로부터 36개월(3년간)까지
- 통장개설 : 사업연도에 따라 구별하여 수행기관(울산일자리재단) 명의의 시금고 통장 개설 및 관리
- 적립방법 : 청년 본인 부담금 적립 확인(경남은행) 후 공제금 전용통장에 대상자 이름으로 매월 적립
- 적립시기 : 매월 30일
- 적립금액 : 매월 1인 20만원(3년간 720만원)

## 4 만기지급

가. 지급대상 : 공제가입일 이후 적립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청년

※ 본인계좌 만기일을 공제만기일로 봄

나. 지급요건(모두 충족하여야 함)

- (거주지) 청년 본인은 가입하는 해 1. 1.이전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울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, 배우자도 혼인 신고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울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- (재 직) 가입당시 재직했던 기업과 동일한 곳에 계속 근무 유지
- (결 혼) 가입일 이후 결혼 및 혼인신고 완료(초혼만 해당, 재혼 제외)
- (적 립) 공제가입기간(36개월) 동안 본인부담금 모두 적립완료

다. 신청 및 지급시기

- (안 내) 만기 사실을 만기일 15일전까지 청년에게 통보
- (신 청) 신청서(서식4)를 작성하여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
※ 유예신청도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, 본인 적립금도 유예기간까지 유지하여야 함.
- (지급시점)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청년에게 지급

라.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

- (제출서류) 신청서(서식 4), 지급통장사본, 증빙서류 등
- 확인방법(증빙서류)
  - (거주지)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등
  - (재 직) 고용보험가입이력서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확인서 등
  - (결 혼)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신고일을 알 수 있는 서류 등
  - (적 립) 시금고에서 적립 확인(공문 등) 등

마. 유형별 만기 공제금 지급

결혼했을 경우	결혼하지 않았을 경우	비고
1,800만원 + 이자 (시 720, 근로자 1,080) + 이자	1,440만원 + 이자 (시 360*, 근로자 1,080) + 이자 * 시 지원금의 50%만 지급	※금리: 약정이자

※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희망 시 1년에 한해 유예, 유예기간 중 결혼 시 전액지급



## 5 중도해지

가. 중도해지란 일정사유로 가입당시 자격조건이 변경되거나, 변심 등으로 희망 공제사업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

※ 중도해지는 시 적립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본인 계좌는 그대로 유지 가능

나. 중도해지 사유

### 1)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

- 창업, 이직, 학업, 기타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
- 배임·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
- 울산 외 지역 전출(배우자 포함)
- 자기부담금 3개월이상 미납
- 자격위조 등으로 부정수급
- 기타 변심

### 2) 재직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

- 기업의 휴·폐업, 부도, 해산 등
- 기업의 울산 외 지역 전출
-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
- 재직기간 중 제조업 이외업종 변경 또는 대기업으로 변경 시

### 3) 기타 청년의 사망,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

다. 해지 시기 및 절차

### 1) 신청에 따른 해지(청년)

- 신청기한 : 중도해지 사유발생일 익월 자기부담금 적립 전일까지
- 신청방법 : 신청서(서식4)를 작성하여 제출
- ※ 본인 부담금 납부통장 적립은 본인의사에 따라 유지 가능
- 수행기관은 해당 청년의 지원금 적립 중지

### 2) 직권에 의한 해지(수행기관)

- 청년이 자격유지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청년 자기 부담금을 3개월이상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
- ※ 반드시 3회이상 본인에게 제출 및 적립 독려 후 직권해지(지원금 적립 중지)

라.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

구분	결혼했을 경우		결혼하지 않았을 경우		비고	
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청년자기부담금	지원금		
청년귀책	전액	50%	전액	미지급	※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- 12개월 이하일 경우 : 지급 제외	
기업귀책	전액	50%	전액	50%		
기 타	사망	전액	전액	전액		미지급
	그외	전액	전액	전액		전액

\* 가입기간은 해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

<지원금 해지 환급금 전액지급불가 >

- ❖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 일 경우
- ❖ 중도해지 사유발생 이전까지 자기 부담금 3개월이상 미납일 경우(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)
- ❖ 청년 귀책 사유 중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,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(가입기간, 결혼 유무와 관계없음)

마.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

-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해지환급금은 근무기간(월)에 따른 지원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되, 근무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'정상'인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기간별 환급금
  - 납입(적립)기간 12개월 이하일 경우 : 0원
  - 납입(적립)기간 12개월 초과일 경우 :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에 의거

바. 지급시기

- 해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## 6 기타

### 가. 자격 조건 관리

- 수행기관은 청년의 자격유지조건을 분기별로 반드시 확인
  - 미제출시 반드시 3회 이상 본인에게 제출 독려하고 그 이후에도 미 제출시 직권해지 후 중도해지지급 요건에 따라 지원금 지급
- 자격확인방법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주민등록초본(배우자 포함) 등

### 나. 자격 조건 통보 의무

- 청년은 거주지, 직장 등 변경으로 자격 변동 시 익월 본인부담금 적립전일까지 수행기관(울산일자리재단)에 통보
  - 제출서류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주민등록초본(배우자 포함) 등
- 미통보시 직권해지 사유에 해당(중도해지지급요건 불문 지원금 미지급 가능)

##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(FAQ)

### 【신청관련】

- Q1. 주민등록이 2022. 1. 1. 이전에는 울산이었다가 잠시 타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울산으로 왔을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?  
☞ 본 사업은 울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울산청년이 대상이므로 22. 1. 1. 이후 하루라도 울산 외 지역 거주로 되어 있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음.
- Q2. 해당기업 근속기간은 2년이 넘지만 연속이 아니고 잠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?  
☞ 연속2년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함.
- Q3. 다른 공제사업 만료경험은 없고, 중도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?  
☞ 모든 자산형성 사업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중도탈락한 경우에도 신청불가

### 【중도해지】

- Q1. 본인 희망으로 울산시 내 소재 타기업체 이직 시 혜택 여부?  
☞ 기업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. 다만 결혼했을 경우에는 기간 중 지원금의 50% 지급함.
- Q2. 근로자가 타 시·도로 주소 이전 시?  
☞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. 다만 결혼했을 경우에는 기간 중 지원금의 50% 지급함.
- Q3. 기업체가 타 시·도로 이전 시?  
☞ 기업 귀책사유로 기업체가 이전하기 전까지 기간 중 지원금의 50% 지급함.

### 【만기시】

- Q1. 공제 만기 후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?  
☞ 결혼 유도를 위한 상품이지만 장기근로의 취지도 있으므로 기간 중 지원금 50%만 지급
- Q2. 만기 후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유예기간과 유예 신청방법은?  
☞ 만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가 가능하며,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.
- Q3. 유예 후 만기금 신청방법은?  
☞ 만기금 신청방법과 동일

# 서식 1

##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참여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인적사항	성 명	전 화 번 호
	주 민 등 록 번 호	이 메 일
	주 소	

병역사항	[ ] 필 (복무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) [ ] 미필 [ ] 면제 [ ] 해당없음
------	--

신청정보	청년	취업일자	년 월 일	재직기간	개월
		20121년 연말정산급여총액	원	2021년 월 평균급여액	원
	기업	회사명 (전화번호)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	주소		업태 / 종목	

추가 확인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공제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등)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(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*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* 산학일체형도제학교, 전문대재학생단계, 유니테크, IPP형 일학습병행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-----------	--

상기 근로자는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, 「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」 참여와 본인 부담금(월30만원)을 3년간 납부할 것을 동의합니다..

년 월 일  
신청인 성명  
(서명 또는 인)

**울산일자리재단** 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본인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기준), 2019년 연말정산 증빙서류 2. 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3.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 4.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※제출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-----	---

## 서식 2

#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결정 통지서

가입연도			일련번호		
신청자	성명			휴대전화	
	생년월일			이메일	
	주소				
공제정보	청년 본인부담금	매월 (매월입급일: )	원	적립기간	년 월 일~ 년 월 일 (총 36개월)
	시지원 지원금	매월	원	적립기간	년 월 일~ 년 월 일 (총 36개월)

귀하를 고용위기지역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참여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내에 「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」 계좌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울산일자리재단 원장 귀하

### <유의사항>

1. 자격유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지원금 적립이 중단되며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.
2. 중도해지 시 지원금의 해지환급금은 사유발생 이전까지 자기 부담금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인 경우에만 가입기간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.
3. 3개월이상 자기부담금 미적립 시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.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지침서를 참고하시고,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### 서식 3

##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신청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본인은 「울산청년 희망 공제 사업」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일 기준으로 “본인”의 사업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	
① 정부공제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등)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(가입 후 중도탈락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)	[ ] 예 [ ] 아니오
② 2022. 1. 1.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하루라도 울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	[ ] 예 [ ] 아니오
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* 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	[ ] 예 [ ] 아니오
④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인 자 * 급여에는 기본급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등 각종 제수당 및 성과급 등도 모두 포함하여 초과여부 판단	[ ] 예 [ ] 아니오
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자 * 가입 후에도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유지 가능	[ ] 예 [ ] 아니오
⑥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, 승선근무에 비역 등으로 의무 복무했던 자 ↳ (⑥-1 예 답변시)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재직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자	[ ] 예 [ ] 아니오 [ ] 예 [ ] 아니오
⑦ 재택근무자 *가입 후 재택근무 시 중도해지	[ ] 예 [ ] 아니오
⑧ 생계급여 수급자	[ ] 예 [ ] 아니오
⑨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	[ ] 예 [ ] 아니오
⑩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 및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	[ ] 예 [ ] 아니오
⑪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제조업 중소기업이 아닌 자	[ ] 예 [ ] 아니오

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[ ] 예 [ ] 아니오

자격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지원금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(200%~500%) 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 [ ] 예 [ ] 아니오

※ 위 사항에 대해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울산일자리재단 원장 귀하





**서식 5**

**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유예 신청서**

청년 신청 사항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	
	연 락 처	주소지 전화번호		휴대전화	
		전자우편 주소			
공제 정보	본 인 적 립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36개월)			
유 예 정 보	유 예 사 유				
	유 예 기 간				

본인은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이 만기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유예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일자리재단 원장 귀하

## 서식 6

###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우리시는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보험료 납부금액, 고용보험이력, 소득정보, 사업자등록여부 등	지원 자격확인, 정책자료 활용	4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 동의

 부동의

#### □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민등록번호	지원 자격확인, 이중지원확인	4년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 동의

 부동의

#### □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항목	보유기간
시, 경남은행, 고용노동부	지원 자격확인, 지원자 관리, 이중지원확인	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	4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 동의

 부동의

2022년 월 일

본인 성명 (인)